
적십자사 vs 한마음혈액원, 군인 혈액 두고 '유혈' 전쟁

- 부정청탁 의혹제기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하지만, 수수방관하는 복지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2일(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 - 국방부 간 헌혈 협약》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해,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한적십자사의 군에 대한 혈액 무상공급(전시포함)과 군의 대한적십자사 헌혈활동 적극협력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은 대한적십자사만 참여 시행해왔다.

그런데 2017년 초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에 헌혈 참여를 요청한 문서의 '(한마음혈액원을 포함한) 단체헌혈 가능 혈액원 현황' 을 국방부가 그대로 각급 부대에 통보하면서 한마음혈액원도 군부대 단체헌혈 사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 2017년 6월부터 한마음혈액원은 각 부대와 개별접촉하여 논산육군훈련소,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30사단과 군부대 단체헌혈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적십자사는 2017년 9월 국방부에 '상호협력관계 유지' 를 거론하며, 국방부 헌혈원의 적십자사 일원화를 요구했다. ☞참고 [그림1]

[그림1] 적십자사가 국방부에 '업무협의를 요청' 하며 보낸 공문

그보다 앞선 2017년 6월 19일 적십자사 수급관리팀은 국방부로 '군 단체헌혈 관련 대한적십자사 의견' 이라며 국방부 지휘부와 적십자사 간의 협약을 이행하고, 유관기관 관련지침을 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④ 업무협의 요청사항

- (국방부 지휘부와 협약 이행 협조요청) 국방부장관-대한적십자사 회장 또는 국방부차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협의를 통해 적십자사-국방부간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 재확인
- (유관기관 관련지침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및 국방부 등 현혈정책 수립 국가 기관과 '군 단체현혈 수행기관의 기준 및 자격' 지침화 추진

1982년부터 부여됐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여기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현혈 추진을 위해 국방부 퇴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면서 군 현혈원 일원화를 주장했다. ☞참고 [그림2]

[그림2] 적십자사가 국방부에 보낸 ‘한마음혈액원 부정청탁 의혹 제기’ 공문

-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 (경 과) 現 논산 육군훈련소 및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30사단에서 민간혈액원(한마음)과 단체현혈 추진

- (논산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인사처장 중심으로 민간혈액원(한마음)과 현혈 추진 논의 중
- (수도방위사령부) 민간혈액원(한마음)에서 군부대 방문 및 문서 전달함
 - 사령관 또는 참모장이 의무대장에게 민간혈액원(한마음) 현혈 지시
- (육군 30사단) 민간혈액원(한마음)과 현혈 실시(17.6.15, 30사단 의무대 28명 현혈)

※ 민간혈액원(한마음)은 국방부 퇴직자를 군 단체현혈 추진을 위해 고문으로 영입(17.5.1)

-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 (경 과) 現 논산 육군훈련소 및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30사단에서 민간혈액원(한마음)과 단체현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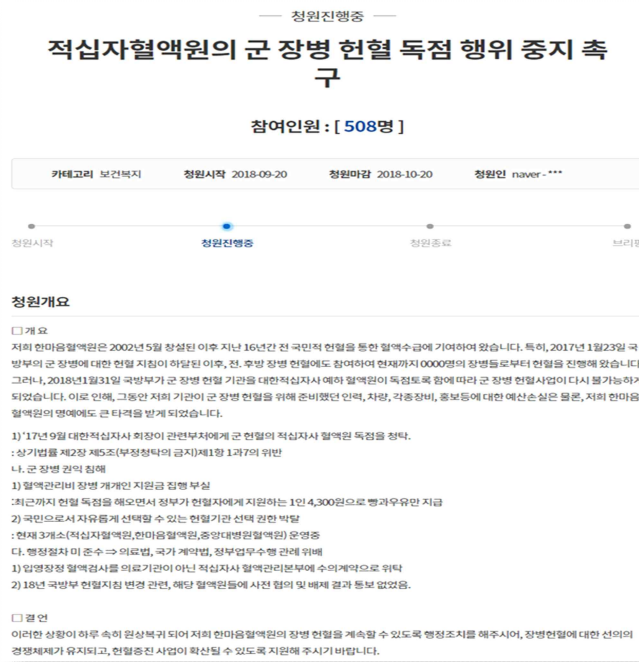
- (논산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인사처장 중심으로 민간혈액원(한마음)과 현혈 추진 논의 중
- (수도방위사령부) 민간혈액원(한마음)에서 군부대 방문 및 문서 전달함
 - 사령관 또는 참모장이 의무대장에게 민간혈액원(한마음) 현혈 지시
- (육군 30사단) 민간혈액원(한마음)과 현혈 실시(17.6.15, 30사단 의무대 28명 현혈)

※ 민간혈액원(한마음)은 국방부 퇴직자를 군 단체현혈 추진을 위해 고문으로 영입(17.5.1)

결국 국방부는 2018년 1월 25일 군 단체헌혈 사업시행자를 다시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마음혈액원도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적십자 혈액원의 군 장병 헌혈 독점행위 중지 촉구’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적십자사가 군 장병 헌혈기관을 다시 독점하고 예산 손실과 명예실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참고 [그림3]

[그림3]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진행중인 한마음혈액원의 청원



나아가 적십자로의 국군장병 헌혈기관 일원화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군 장병 권익 침해 ▶의료법 및 국가계약법, 정부업무수행 관례 등의 위반을 거론하며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까지 요청했다.

한편, 국민 혈액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급업체 간 ‘알아서 할 일’ 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위와 같은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한 결과, “헌혈증진을 위해 개인 및 단체 헌혈자(군부대 포함) 선정은

당사자 협의(협약)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참고 [그림4]

[그림4] 의원실에 제출한 ‘군 헌혈관련 한마음혈액원 진입에 대한 복지부 입장’

4. 군 헌혈관련 한마음혈액원 진입에 대한 복지부 입장

- 혈액은 공공재로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혈액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혈액관리법에 따라 복수의 혈액원*을 허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
- 헌혈증진을 위해 개인 및 단체 헌혈자(군부대 포함) 선정은 당사자 협의(협약)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복지부는 3개 혈액원에 대해 군 헌혈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군부대 헌혈을 놓고 혈액공급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며, “복지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두 기관의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단체헌혈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고, 군내 단체헌혈 경쟁체제는 국가 헌혈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일선 부대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의 협력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혈액 심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 2013-2018.08.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347건 -
- 과태료 1,610만9천원 -
-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
- 운전자 집체교육은 이수율 저조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없어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2일(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수송차량 교통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항에 따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혈액공급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외 목적으로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어,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1) 2013-2018.08.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347건, 과태료 1,610만9천원
과속이 285건(82.1%)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1,242만5천원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위반건수는 총 3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285건으로 확인됐으며, 신호위반(29건), 주정차 위반(16건), 전용차로 위반(10건), 끼어들기 금지(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과속의 경우, 2013년 31건에서 2014년 33건, 2015년 34건, 2016년 50건, 2017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8월 기준, 혈액공급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는 총 50건이다.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 이후 납부된 과태료는 총 1,610만9천원으로, 이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1,242만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3년-2018.8 연도별 위반유형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건, %, 천원)

구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금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13	31	86.1	1,539	3	8.3	220	1	2.8	40	1	2.8	60	0	0	0	36	100	1,859
2014	33	80.5	1,472	5	12.2	350	0	0	0	2	4.9	180	1	2.4	40	41	100	2,042
2015	34	77.3	1,554	5	11.4	360	0	0	0	4	9.1	200	1	2.3	100	44	100	2,214
2016	50	87.7	2,348	3	5.3	220	1	1.8	40	1	1.8	60	2	3.5	80	57	100	2,748
2017	87	76.3	3,512	11	9.6	734	12	10.5	476	1	0.9	95	3	2.6	120	114	100	4,937
2018	50	91	2,000	2	3.6	150	2	3.6	64	1	1.8	95	0	0	0	55	100	2,309
합계	285	82.1	12,425	29	8.4	2,034	16	4.6	620	10	2.9	690	7	2.0	340	347	100	16,109

※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5개 혈액원 중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347건 중 83건으로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경북혈액원의 전체 위반건수 건 중 과속이 76건을 차지했다. 그 뒤를 서울남부혈액원이 총 55건, 경남혈액원이 33건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표2] 2013년-2018.8 혈액원별 위반유형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건, 천원)

혈액원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금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중앙혈액원	11	486	0	0	0	0	2	180	1	40	14	706
서울남부혈액원	26	1213	7	550	12	492	6	320	4	220	55	2,795
서울동부혈액원	8	412	3	210	0	0	0	0	0	0	11	622
부산혈액원	25	1130	1	70	0	0	0	0	0	0	26	1,200
대구경북혈액원	76	3097	3	210	4	128	0	0	0	0	83	3,435
인천혈액원	11	558	2	140	0	0	0	0	0	0	13	698
울산혈액원	14	561	1	70	0	0	0	0	0	0	15	631
경기혈액원	9	304	0	0	0	0	2	190	0	0	11	494
강원혈액원	21	890	4	272	0	0	0	0	0	0	25	1,162
충북혈액원	7	224	2	112	0	0	0	0	0	0	9	336
대전세종충남혈액원	3	104	0	0	0	0	0	0	1	40	4	144
전북혈액원	14	678	1	70	0	0	0	0	0	0	15	748
광주전남혈액원	27	1131	4	260	0	0	0	0	1	40	32	1,431
경남혈액원	33	1637	0	0	0	0	0	0	0	0	33	1,637
혈장분획센터	0	0	1	70	0	0	0	0	0	0	1	70
합계	285	12,425	29	2,034	16	620	10	690	7	340	347	16,109

※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한편,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에 따르면, ①운전자 집체교육 인원이 2015년 32명, 2016년 57명, 2017년 31명으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고, ②「도로교통법」 개정 —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혈액을 신지 않은 혈액공급차량의 과속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혈액공급차량이 과속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해임’ 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비리’ 로 드러나...

- 2013-2018.09 대한적십자사 직원 해임 13건, 파면 4건 -
 - 해임 및 파면된 직원 대부분 청렴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2일(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처분별 임직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 9개월 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및 파면’ 된 직원은 각각 13명,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 2018년 8월 ‘해임’ 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비리’ 로 드러나...

간호사 이 모씨의 대한적십자사 채용 비리를 주도한 광주전남혈액원 총무팀장 정모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모씨는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시 가점 사항인 “이 모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챙겨달라” 고 요구했다.

이 모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2017년 12월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진행된 채용에 이 모씨가 재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전형 불합격이 마땅하지만, 정씨 주도 하에 이 모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또한, 모종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이씨의 면접관으로 분했고, 이씨에게 노골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며 이씨를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한적십자사는 면접관 정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2) 2013-2018.09 대한적십자사 직원 해임 13건, 파면 4건

최근 3년 9개월 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해임되거나 파면된 직원은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50명이었다. 이 중 견책이 54명, 감봉 54명, 정직 19명, 강등 6명, 해임 13명 파면이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8명이고, 견책 17명, 감봉 13명, 정직 4명 강등 1명 해임 2명 파면 1명이었다. 징계인원이 48명으로 가장 많은 2016년에는 견책 16명, 감봉 18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5명, 파면은 2명이었다. 2017년에는 총 징계 인원이 39명이었고, 견책 16명, 감봉 14명, 정직 5명, 강등 1명, 해임 2명이었다.

2018년 9월 기준, 대한적십자사 징계 인원은 견책 5명, 감봉 9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4명, 파면은 한명도 없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징계처분자 중 임원은 한명도 없었다.

☞참고 [표1]

[표1] 연도별 징계처분별 임직원 현황

연도	유형						합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5	17	13	4	1	2	1	38
2016	16	18	5	2	5	2	48
2017	16	14	5	1	2	1	39
2018	5	9	5	2	4	-	25
합계	54	54	19	6	13	4	150

2) 해임 및 파면된 직원 대부분 청렴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직원의 대부분이 '청렴 의무 혹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해임 직원 13명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자는 4명이었다. 파면자 4명은 모두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참고 [표2]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 지적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표2] 연도별 해임 및 파면 임직원 징계 사유

연도	징계일자	소속기관	성명	직급	징계사유	징계등급
1	20150323	○○○○○병원	유○○	사무보조원	청렴의 의무 위반	파면
2	20151023	○○열액원	강○○	임상병리사 4급	성실의무 위반	해임
3	20151111	○○열액원	김○○	임상병리사 5급	성실의무 위반	해임
4	20160128	○○○○○병원	서○○	간호사 5급	성실의무 위반	해임
5	20160330	○○○○○병원	이○○	영양사 5급	청렴의 의무 위반	파면

연 번	징계일자	소속기관	성 명	직급	징계 사유	징계등급
6	20160331	○○○○○병원	박○○	방사선사 3급	정령의 의무 위반	해임
7	20160513	○○지사	남○○	간사 5급	정령의 의무 위반	파면
8	20160531	○○혈액원	한○○	임상병리사 4급	성실의무 위반	해임
9	20161215	○○○○혈액원	송○○	간호사 4급	성실의무 위반	해임
10	20161231	본사	고○○	관리사 2급	성실의무 위반	해임
11	20170920	○○지사	김○○	보조원	정령의 의무 위반	파면
12	20170920	○○지사	이○○	간사 5급	정령의 의무 위반	해임
13	20171216	○○○○혈액원	김○○	운전원 을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해임
14	20180119	○○○○○병원	조○○	임상병리사 4급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해임
15	20180329	○○○○○○복지외관	이○○	계약직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해임
16	20180622	○○○○○병원	도○○	임상병리사 5급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해임
17	20180820	○○○○혈액원	정○○	관리사 2급	성실의무 위반	해임

의료기관 24%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전히 미배치

- 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2017년 대비 2.3% 감소 -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5,803건으로 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2일(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08.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해당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해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 경우,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환자안전법」 14조 2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0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수가로 책정하고 있다.

1) 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2017년 대비 2.3% 감소,
전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에 여전히 미배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에 여전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

☞참고 [표1]

[표1] 2016-2018.08. 종별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배치유무	약국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종합 병원	상급 종합병원	합 계
2016	대상기관	해당 없음	291	0	1	323	298	43	956
	배치기관		86(29.6)	0	1(100)	124(38.4)	213(71.5)	43(100)	467(48.8)
	의사(명)		1	0	0	1	0	0	2
	간호사(명)		85	0	1	123	264	101	574
2017	대상기관	해당 없음	233	0	0	374	301	43	951
	배치기관		116(49.8)	0	0	260(69.5)	282(93.7)	43(100)	701(73.7)
	의사(명)		0	0	0	1	0	0	1
	간호사(명)		116	0	0	259	359	117	851
2018	대상기관	해당 없음	217	0	0	406	305	42	970
	배치기관		137(63.1)	0	0	273(67.2)	285(93.4)	42(100)	737(76.0)
	의사(명)		0	0	0	1	0	0	1
	간호사(명)		140	0	0	275	392	125	932

※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승희 의원실 깨장리

2)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2018년 5,803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최대

한편,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가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표2] 2016-2018.08.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종별의료기관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대상기관**	불명약	약국	한방	치과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	합계	
				병·의원	병·의원					종합병원		
2016년*	낙상	-	-	-	-	-	21	38	131	92	282	
	투약	-	10	-	-	-	6	3	31	156	206	
	검사	-	-	-	-	-	-	-	9	6	15	
	저지/시술	-	-	-	-	-	1	-	5	2	8	
	수술	-	-	-	-	-	-	-	3	2	5	
	환자의자살/자해	-	-	-	-	-	-	-	3	1	4	
	의료장비기구	-	-	-	-	-	-	-	2	4	6	
	진료재료오염/불량	-	-	-	-	-	-	-	-	-	-	
	식사	-	-	-	-	-	-	2	3	-	5	
	감염	-	-	-	-	-	-	1	-	1	2	
	마취	-	-	-	-	-	-	-	-	1	1	
	수혈	-	-	-	-	-	-	-	1	1	2	
	전산장애	-	-	-	-	-	-	-	-	-	-	
	기타***	-	-	-	-	-	-	1	10	12	4	27
	불명약	-	-	-	-	-	-	-	-	-	-	
	소계	-	10	-	-	-	-	29	54	200	270	563
2017년	낙상	-	-	-	-	-	131	449	854	401	1,835	
	투약	-	118	-	-	-	7	31	449	470	1,075	
	검사	-	-	-	-	-	2	1	230	42	275	
	저지/시술	-	-	-	-	-	1	2	44	9	56	
	수술	-	-	-	-	-	1	-	28	14	43	
	환자의자살/자해	-	-	-	-	-	2	6	18	13	39	
	의료장비기구	-	-	-	-	-	-	-	21	26	47	
	진료재료오염/불량	-	-	-	-	-	1	-	28	55	84	
	식사	-	-	-	-	-	1	6	14	3	24	
	감염	-	-	-	-	-	-	3	12	4	19	
	마취	-	-	-	-	-	-	-	4	3	7	
	수혈	-	-	-	-	-	-	-	18	4	22	
	전산장애	-	-	-	-	-	-	-	1	-	1	
	기타***	-	-	-	-	-	-	6	69	212	45	332
	불명약	5	-	-	-	-	-	-	-	-	5	
	소계	5	118	-	-	-	-	152	567	1,933	1,089	3,864

2018년 8월	낙상	-	-	19	-	-	360	687	1,301	477	2,844
	투약	-	287	-	-	-	21	39	702	308	1,357
	검사	-	-	-	-	-	4	1	270	52	327
	저지/시술	-	-	1	1	2	2	2	43	23	74
	수술	-	-	-	-	-	7	-	36	21	64
	환자의자살/자해	-	-	-	-	-	6	22	24	8	60
	의료장비기구	-	-	-	-	-	2	2	23	20	47
	진료재료오염/불량	-	3	-	-	-	10	5	145	134	297
	식사	-	-	-	-	-	5	13	30	3	51
	감염	-	-	-	-	-	1	-	29	75	105
	마취	-	-	-	1	-	-	-	2	1	4
	수혈	-	-	-	-	-	1	-	18	10	29
	전산장애	-	-	-	-	-	-	-	5	-	5
	기타***	-	-	-	1	-	40	86	346	62	535
	불명약	4	-	-	-	-	-	-	-	-	4
소계	4	290	20	3	2	459	857	2,974	1,194	5,803	

※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환자안전법』 시행(' 16.7.29)이후보고현황

**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이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법에 따라 검증 후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므로 보고자 또는 보고 의료기관이 환자안전법에 따른 전담인력 의무배치 대상의료기관인지 여부 파악 곤란

*** 탈원, 폭력, 화상, 욕창 등

이에 김승희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며,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2/010-3819-3280)

실효성 없는 폐암검진사업 대책마련 급선무...

- 폐암환자, 매년 2만명 이상 발생, 2010년 이후 6년간 14만명 달해 -
- 폐암검진사업 시행 이후 11,461명만 폐암검진 참여 -
- 여성 폐암검진자는 2.5%인 284명에 불과 -
- 폐암검진사업 대상자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포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2일(월)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7년 폐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암사망율이 가장 높은 암종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1) 폐암환자, 매년 2만 명 이상 발생, 2010년 이후 6년 동안 14만 명 달해
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137,959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96,324명, 여성이 41,6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1,275명(남 14,999명 · 여 6,276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2,211명(남 15,460명 · 여 6,751명), 2012년 22,477명(남 15,583명 · 여 6,894명), 2013년 23,476명(남 16,369명 · 여 7,107명), 2014년 24,253명(남 16,898명 · 여 7,355명), 2015년 24,267명(남 17,015 · 여 7,252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100,162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남성이 73,075명, 여성이 27,08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0년 15,625명(남 11,416명 · 여 4,209명), 2011년 15,867명(남 11,503명 · 여 4,364명), 2012년 16,654명(남 12,175명 · 여 4,479명), 2013년 17,177명(남 12,519명 · 여 4,658명), 2014년 17,440명(남 12,785명 · 여 4,655명), 2015년 17,399명(남 12,677명 · 여 4,722명), 2016년 17,963명(남 13,324명 · 여 4,639명), 2017년 17,980(남 13,272명 · 여 4,7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1]

[표] 2010년—2017년 연도별 《폐암 발생 및 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폐암 발생 현황			폐암 사망 현황		
발생연도	성	발생자수 (명)	조발생률 ¹⁾ (명/10만명)	연령표준화 발생률 ²⁾ (명/10만명)	사망자수 (명)	조사망률 ¹⁾ (명/10만명)	연령표준화 사망률 ³⁾ (명/10만명)
2010	전체	21,275	42.7	29.2	15,625	31.3	25.3
	남성	14,999	60.1	48.4	11,416	45.7	45.6
	여성	6,276	25.2	15.3	4,209	16.9	11.4
2011	전체	22,211	44.3	29.3	15,867	31.7	24.6
	남성	15,460	61.6	47.6	11,503	45.9	43.7
	여성	6,751	27.0	15.8	4,364	17.4	11.3
2012	전체	22,477	44.6	28.3	16,654	33.1	24.5
	남성	15,583	61.9	45.6	12,175	48.3	43.9
	여성	6,894	27.4	15.6	4,479	17.8	11.1
2013	전체	23,476	46.4	28.2	17,177	34.0	24.0
	남성	16,369	64.7	45.5	12,519	49.5	42.5
	여성	7,107	28.1	15.5	4,658	18.4	11.0
2014	전체	24,253	47.8	28.0	17,440	34.4	23.3
	남성	16,898	66.6	44.8	12,785	50.4	41.4
	여성	7,355	29.0	15.5	4,655	18.3	10.5
2015	전체	24,267	47.6	26.8	17,399	34.1	22.2
	남성	17,015	66.8	42.9	12,677	49.8	38.9
	여성	7,252	28.4	14.7	4,722	18.5	10.2
2016	전체				17,963	35.1	21.9
	남성				13,324	52.2	38.9
	여성				4,639	18.1	9.5
2017	전체				17,980	35.1	20.8
	남성				13,272	51.9	36.7
	여성				4,708	18.4	9.1
합계	전체	137,959	273.4	169.8	100,162	268.8	186.6
(2010-2015)	남성	96,324	381.7	274.8	73,075	393.7	331.6
(2010-2017)	여성	41,635	165.1	92.4	27,087	143.8	84.1

※출처: 국립암센터,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남성·여성 모두 감소

남 50.5%·여 12.2% → 남 36.7%·여 9.1%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남성 50.5%, 여성 12.2%였던 사망률은 2017년 남성 36.7%, 여성 9.1%까지 감소했다.

☞참고 [표2]

[표] 1997년—2017년 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10만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50.5	48.8	50.7	54.6	54.5	54.4	52.6	52.8	51.8	51.4	49.3	48.2	45.6	45.6	43.7	43.9	42.5	41.4	38.9	38.9	36.7
여성	12.2	11.4	11.8	12.7	12.6	13.1	12.6	12.4	12.6	11.9	11.8	11.6	11.5	11.4	11.3	11.1	11.0	10.5	10.2	9.5	9.1

※출처: 국립암센터,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3) 폐암검진사업 대상자에 30갑년 고위험 흡연자만 포함, 일반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는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2017년 2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 실시,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갑년(Pack Year):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 30갑년 이상의 현재흡연자 또는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

4) 사업 시행 이후 11,461명만 폐암검진 참여, 여성 폐암검진자는 2.5%인 284명에 불과

국립암센터 확인결과, 2018년 9월 기준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11,461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50-54세가 249명(2.2%), 만55-59세가 3,440명(30.0%), 만 60-64세가 3,658명(31.9%), 만65-69세가 2,484명(21.7%), 만70-74세가 1,630

명(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1,461명 참여자 중 남성은 97.5%에 해당하는 11,177명인 반면, 여성은 2.5%에 해당하는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폐암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표3]

[표] 2017.02~2018.09 성별 연령별 폐암검진 참여 현황

(단위: 명, %)

연령	인원		성별			
			남		여	
전체	11,461명	100.0%	11,177명	97.5%	284명	2.5%
50~54	249	2.2%	245	2.4%	4	1.4%
55~59	3,440	30.0%	3,353	30.0%	87	30.6%
60~64	3,658	31.9%	3,560	31.9%	98	34.5%
65~69	2,484	21.7%	2,419	21.6%	65	22.9%
70~74	1,630	14.2%	1,600	14.3%	30	10.6%

※출처: 국립암센터,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이에 김승희 의원은 “잘못된 사업기준으로 여성 흡연 피해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여성 흡연 피해자의 폐암검진참여 접근성 확대’를 요구했다.

■ 담당: 윤찬성 비서 (02-784-8191 / 010-3005-9737)